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주) ○○ 양화공이 매일 서서 작업하는 관계로 양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한 경우

(92-421호 92. 6. 29. 기각)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박 ○ ○  
 주소 : 성남시 중원구  
 원 처 분 청 :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 로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주) ○ ○

###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11. 29.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은 (주)○○소속 양화공으로 1986. 11. 3 입사하여 매일 서서 작업하다가 1989. 11월경부터 양쪽다리에 통증이 났다고 주장하며 1991. 10. 10. 구로의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에 대한 요양을 신청한바 원처분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서 무릎에 무리를 주어 발생한 직업병으로 마땅히 산재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 승인을 요구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 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2. 5. 19. 박○○)
2. 원처분청 의견서(1992. 5. 20.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2. 3. 12.)
4. 최초요양 불승인 통보 사본(1991. 11. 29.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5.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 사본(1992. 3. 7. 김○)
6. 요양신청서 사본(1991. 10. 28. 박○○)
7. 문답서 사본(1991. 11. 8. 박○○)
8. MRI소견서 사본(1991. 11. 20. 영등포병원)
9. 소견조회 회신 사본(1991. 11. 28. 인하병원)
10.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서 사본(1991. 11. 정○○)
11. 재해조사복명서 사본(1991. 11. 7급 이○○)
12. 진단서 사본(1992. 1. 13. 백병원)
13. 진단서 사본(1991. 1. 6. 백병원)
14. 진단서 사본(1991. 2. 9. 신홍의원)
15. 소견서 사본(1991. 11. 22. 국립의료원장)
16.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주)○○ 양화공으로 1986. 11. 3. 입사하여 매일 서서 작업하다가 1989. 11. 월경부터 양측다리에 통증왔다고 주장하며 1991. 10. 10. 구로의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에 대한 요양을 신청한 바 원처분청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 하였는바 청구인은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서 무릎에 무리를 주어 발생한 직업병으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청구인은 (주)○○ 양화공으로 1986. 11. 3. 입사하여 수출생산부 라인에서 매일 서서 제품 가공작업을 하여 양쪽 무릎에 통증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상병과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구로의원 담당 주치의의 상병명은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으로 되어 있고, 1991.

1 6. 자 백병원 소견은 “양측 슬관절 동통이 계속되는 상태로 상병명 : 양슬관절 연골 연화증 및 활막염으로 사료되며 이는 직업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및 1992. 1. 13. 자 소견은 “양측 대퇴골 연골 연화증으로 1991. 12. 12. 관절경 검사 및 헤어진 연골부 수술 시행 하였음”, 1991. 2. 9. 자 신홍의원 소견은 “상병명 : 양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은 오랫동안 서 있는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1991. 11. 20. 자 영등포병원 소견은 “MRI소견상 우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손상, 좌슬부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 1991. 11. 22. 자 국립의료원 소견은 “약 3년전부터 무릎(양측)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MRI검사를 하였으나 MRI검사와 이학적 소견 및 병력이 일치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의견이며, 원처분청에서 인하병원에 특진 의뢰한 소견은 “1)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십자, 후십자 인대손상이 발병하는 원인 : 거의 대부분 외상에 의해서 발병한다, 2) 장기간 서서 일하는 작업과 상기 병명과 인과관계 : 기립자세로 작업하여 나타나는 병으로 추정키는 어려우며 기립자세로 근무중 넘어지거나 외상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등으로 되어 있고,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청구인의 슬관절의 연골 연화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또한 피재자의 업무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인하병원의 MRI소견상 우슬부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및 전방십자 인대의 손상과 좌슬부의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도 피재자의 업무내용인 기립자세 작업으로 오는 질환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더이상의 확진을 위한 검사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며, 노동부 자문의 소견은 “1991. 11. 20. MRI 소견상 반월상 인골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소견은 1991. 12. 12. 시행한 관절경 소견에서 MRI 소견이 틀린 것으로 판정 되었음. 연골 연화증은 특수한 직업 또는 반복되는 작업중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퇴골관절 특히 슬개골 관절염에 발생하는 변성변화의 일종임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인바, 이상의 각 소견과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제화공으로 매일서서

작업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왔다고 주장하나 작업의 내용으로 보아 무릎의 상병을 악화, 유발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견 재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청구인의 기존증으로 판단될뿐 업

무상 사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개발(주) 근로자가 약 1년간 무거운 철근등을 취급하여 오다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한 경우

(92-1110호 92. 11. 28. 기각)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김 ○ ○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원 처 분 청 :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개발(주)

##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6. 26.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은 ○○개발(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 3. 28. 부터 약 1년간 철근등을 취급하여 오다가 1992. 3. 21. 더욱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은 1992. 6. 8. 국립의료원 특진 결과 상병명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되었으나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1991. 3월부터 70~80kg의 무거운 철근다발을 하루에 수십번씩 운반해야 하는 철근공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초기에는 무릎 인대가 아팠으나 일시적인 통증으로 알고 손으로 주무르거나 운동하는 등 가볍게 생각하고 지냈으나 1992. 3. 21.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집에서 쉬다가 1992. 3. 30. 군포정형외과에서 공상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92. 6월 국립의료

원에서 특진결과 상병이 유발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2. 11. 19. 김○○)
2. 답변서(1992. 5. 2. 원처분청)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92. 9. 23.)
4. 진정서 사본(1992. 4. 22. 김○○)
5. 진정서 종결 회시 공문 사본(1992. 6. 26. 원처분청)
6. 재해조사복명서 사본(1992. 5. 원처분청)
7. 문답서 사본(1992. 5. 1. 김○○, 심○○)
8. 소견서 사본(1992. 6. 원처분청 자문의)
9. 특진 소견서 사본(1992. 6. 15. 국립의료원)
10.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1991. 3. 28 ○○개발(주)의 하도급 업체인 ○○건공(주)에 입사하여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 3. 21. 통증 때문에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오전 근무만 하고 귀가 하였다가 1992. 6. 8. 부터 15일까지 국립의료원에서 특진결과 상병명 “좌측 슬관절 퇴행

성 관절염”으로 진단되었는바, 청구인 본인 및 현장 총무 심○○에 의하면 “1991. 3. 28. 입사후 1991. 3. 28. 입사후 1991. 11월경 부터 좌측 하지 슬관절에 이상이 있었으나 평상시와 같이 계속 근무하다가 1992. 3. 21.에는 통증이 심해져 오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고, 1991. 3. 30. 군포정형외과 의원에서 활인성 각막염으로 공상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국립의료원의 소견상 “철근공으로 근무중 외상없이 발병 가능함”의 소견이 있으나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장기간의 경과 과정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질병으로서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단기간 내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병명이 반드시 발생치는 않으며 이는 정상적인 생활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상태로 근무상황 및 연령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불가능함”의 소견과 같이 비록 청구인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작업중 특별한 외상등 특히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병명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개인질병의 악화등 업무외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될뿐,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산업보리

